



귀넷 카운티

교육위원회

MEETING

교육위원회 미팅 참석자에게 기대되는 행동 및 예의에 관한 수칙

교육위원회가 공공장소에서 교육구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인 - 귀넷 카운티 교육 위원회 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육위원회 월례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지만, 대중과의 회의는 아닙니다. 일반에게 공개되는 본 회의에서의 청중의 의견 청취는 교육 위원회 측에서 시민들의 발언을 위해 지정한 시간에 발언하도록 신청한 30분에 한정합니다. 미팅에 참석할 수 없거나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없는 분은 해당 교육위원회 또는 다음 이메일 주소로 의견이나 우려 사항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myschoolboard@gcpsk12.org.

귀넷 카운티 교육구는 귀넷 카운티 교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분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서는 추가의 안전 및 보안 조치를 계속 고려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객 행동 수칙에 대한 명확한 소통, 회의 지원 학교 청원 경찰 인원의 증가, 방문객 환영과 회의실 모니터링을 위한 직원 총원, 회의실 입장 시 비디오 모니터링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회의 참석자는 회의실 입장 전 금속 탐지기와 보안 검사를 통과합니다. 회의 참석자는 보안 체크인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위해 일찍 도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회의 참석자에게 기대되는 행동 및 예의 수칙 및 회의 진행 방해 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미팅이 시작되기 전 방문자는 휴대폰이나 통신기기를 **묵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 방문자와 발언자는 표지판과 포스터를 건물 안으로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 교육 위원회 미팅 참석 신청을 하신 30분의 발언자만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Policy BCBI).
- 발언자와 다른 참석자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시민답고 정중하게 타인을 대하셔야 합니다.
- 참석자는 공손히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발언 중에 말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음으로써 교육위원회 위원과 모든 발언자에 대해서도 예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 교육위원회의 정식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소란을 피울 경우, 교육위원회 의장, 교육감 또는 교육감 지명자가 방해 행동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 그러한 요청에 따르지 않고 방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교육위원회 의장, 교육감 또는 교육감 지명자의 지도 아래 경찰 또는 경비원이 회의실에서 해당 참석자를 퇴장시킬 것입니다. 방해 행위로 인해 퇴장된 사람은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교육위원회 미팅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발언 요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https://www.gcpsk12.org/about-us/board/ho-to-address-the-board>)

다음 달 발언자에 관한 월례 교육위원회 미팅이 끝난 후 금요일 오전 9시에 요청서를 개봉합니다. 각 월례 미팅에서 최대 30분이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 신청자가 다 왔거나 미팅에 참석할 수 없으시면 의견 및/또는 우려 사항을 myschoolboard@gcpsk12.org로 보내십시오.

